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3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김미애 · 이인선 · 서명옥
김태규 · 엄태영 · 한지아
조정훈 · 백종현 · 이종욱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일률적·기계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보행 수요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등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거리 우회 이동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선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항 및 제10조제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원칙을 따라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할 것
2.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횡단보도 설치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추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u>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에 따른 원칙을 따라 정하여야 한다.</u> 1. <u>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할 것</u> 2. <u>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u>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u> <u><신 설></u>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 ----- -----<u>다음 각 호의</u>----- -----. 1. <u>다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10</u>

<u><신 설></u> <u><신 설></u> ② ~ ⑤ (생 략)	<u>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 니할 것. 다만,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 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 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2. 횡단보도 설치 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시 설을 갖추는 것</u> <u>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u> ② ~ ⑤ (현행과 같음)
--	---